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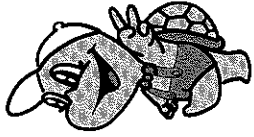


##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00 (신한은행본점8F/D 18층)

전화 : 002-775-4100 (고객만족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hinhanlife.co.kr>



(121-1-097) (200 x 100)

인쇄일자 : '98. 8

신한생명  
친절하고 믿음직한

# 직장인 필수보험

~ 이 보험은 배움이 없는 대신 보람을 가져옵니다. ~

## 약관



판매개시일자: '98. 8. 6

## 계 약 안 내

이 약관은 계약자  
여러분께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행시  
하실 수 있는 규정이므로  
꼭 읽어 보시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드시 알아두실 사항 ..... 3

■ 상품구성 및 보험금 지급내용 ..... 4

■ 약관 주요내용 설명 ..... 7

1. 계약의 효력 ..... 7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7

3. 가입자의 고지의무 ..... 8

4.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부활 ..... 8

5. 보험금 등의 지급 ..... 9

■ 보험약관 ..... 11

1. 무배당 직장인파워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13

2. 무배당 제해사망보상특약 약관..... 31

3. 무배당 장해보상특약 약관..... 39

4. 무배당 교통장해보상특약 약관..... 47

**1** 청약서 작성시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가입사항을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번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태나 직업 등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생명보험은 일반예금과 달리 생명에 대한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이므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시면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약관의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 회

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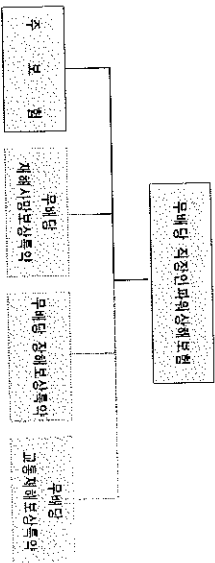
**5** 보험계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본사 상담실이나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품구성 및 보험금 지급내용

1. 상품구성

● 무배당 직장인피역상해보험



2. 지급내용

가. 주보험

| 금 부 영 향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단 기 축 회 금<br>(단기보급형) |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br>(제1금 장해 포함) | - 1·3·5년단기<br>: 이미 납입한 보험료 90%<br>- 7·10년단기<br>: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 재해사망보급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br>(제1금장해 제외)      | 2,500만원                                                          |
| 장애 보상 연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1금~제2금 장<br>해시        | · 제1금 : 매월 150만원씩 120회<br>환급지급<br>· 제2금 : 매월 100만원씩 120회<br>환급지급 |
| 장해 보상금어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3금~제6금 장<br>해시        | · 제3금 : 500만원<br>· 제4금 : 300만원<br>· 제5금 : 150만원<br>· 제6금 : 100만원 |

나. 무배당 재해사망보상특약

| 금 부 영 향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초일재해<br>사망보급금 | 피보험자가 '초일'에 재해로 사망시 | 2,500만원 |
| 응급재해<br>사망보급금 | 피보험자가 '응급'에 재해로 사망시 | 1,000만원 |

[기준 : 피보험자가생존액 1,000만원]

## 약관 주요내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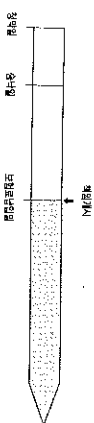
※ 약관 주요내용 설명은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발해 해설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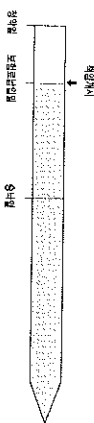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淸約)을 승낙(承諾)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2)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 ① 회사가 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 ② 회사가 승낙 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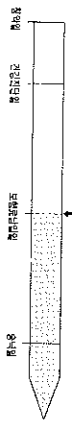


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

- ①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 ② 건강진단을 받은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선언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배당 제해보상특약

(기준 : 피보험자가입금액 1,000만원)

| 금부영성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일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유일"에 제1회로 제1금~제2금 정해시 | · 제1금 : 매월 300만원씩 12회<br>· 제2금 : 매월 200만원씩 12회<br>· 제3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                                                                        |
| 장해보상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장해"에 제1회로 제1금~제6금 정해시 | · 제1금 : 매월 150만원씩 12회<br>· 제2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br>· 제3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4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20만원씩 12회 |
| 유일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유일"에 제1회로 제3금~제6금 정해시 | · 제3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40만원씩 12회                                                  |
| 장해보상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장해"에 제1회로 제3금~제6금 정해시 | · 제3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4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20만원씩 12회                                                   |

라. 무배당 공동제해보상특약

(기준 : 피보험자가입금액 1,000만원)

| 금부영성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일공동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유일"에 공동제해로 제1금~제2금 정해시 | · 제1금 : 매월 300만원씩 12회<br>· 제2금 : 매월 200만원씩 12회<br>· 제3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                                                                        |
| 공동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공동"에 공동제해로 제1금~제2금 정해시 | · 제1금 : 매월 150만원씩 12회<br>· 제2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br>· 제3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4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20만원씩 12회 |
| 유일공동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유일"에 공동제해로 제3금~제6금 정해시 | · 제3금 : 매월 10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40만원씩 12회                                                  |
| 공동장해보상입금액   | 피보험자가 "공동"에 공동제해로 제3금~제6금 정해시 | · 제3금 : 매월 80만원씩 12회<br>· 제4금 : 매월 60만원씩 12회<br>· 제5금 : 매월 40만원씩 12회<br>· 제6금 : 매월 20만원씩 12회                                                   |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피임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3. 가입자의 고지의무

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생명보험은 다수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상부상조하는 제도로서 만약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가 다수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과도하게 되면 회사의 건전한 피보험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및 직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서에서 정답을 하게 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로 장문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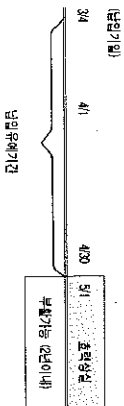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부활

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續費期間)이 경과하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효력 상실(效力喪失))

-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표시된 납입기일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회사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예) 월납



나. 회사가 수급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보험료 은행납부시 납입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시 수급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이 효력 상실되었을 경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금 등의 지급

가.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서류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나. 회사는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보역약관

1. 무배당 직장인파워상해보험 보통보참약관 ..... 13
2. 무배당 제해시암보상특약 약관 ..... 31
3. 무배당 정해보상특약 약관 ..... 39
4. 무배당 교통정해보상특약 약관 ..... 47

무배당 적정인퍼워상해보험보험약관

|                             |    |
|-----------------------------|----|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13 |
| 제 2조 [계약의 효력]               | 13 |
| 제 3조 [회사가 제정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14 |
| 제 4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14 |
| 제 5조 [약관공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14 |
|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15 |
| 제 7조 [대표자의 지정]              | 15 |
| 제 8조 [계약의 무효]               | 15 |
|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5 |
| 제 10조 [배당금의 지급]             | 16 |
| 제 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6 |
| 제 12조 [전월 기타변환시의 보험금]       | 17 |
| 제 13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 17 |
| 제 14조 [계약해소권의 행사제한]         | 18 |
| 제 15조 [보험료의 납입]             | 18 |
| 제 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8 |
| 제 17조 [주소변경 통지]             | 18 |
| 제 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18 |
| 제 19조 [보험상실된 계약의 부활]        | 19 |
| 제 20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19 |
| 제 21조 [보험금등의 지급]            | 19 |
| 제 2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20 |
| 제 23조 [계약내용의 변경]            | 20 |
| 제 24조 [피보험자의 변경]            | 21 |
| 제 25조 [계약자의 인의해지]           | 21 |
| 제 26조 [개발계약으로의 전환]          | 21 |
| 제 27조 [약관대출]                | 22 |
| 제 28조 [계약내용의 교환]            | 22 |
| 제 29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22 |
| 제 30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 22 |
| 제 31조 [분쟁의 조정]              | 22 |
| 제 32조 [관할법원]                | 22 |
| 제 33조 [예금보험기법에 의한 지급보증]     | 22 |
| 제 34조 [준거법]                 | 22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전단을 받은 계약(이하 “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해당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이하 “자동납입 가입”이라 합니다)하거나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가입(이하 “신용카드 가입”이라 합니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 신용카드 가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 발생일, 이하 같습니다)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망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계약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8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2종(단기원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단, 제1금 정해시 포함) : 만기숙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 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재해로 별표3에서 정하는 “정해등급분류표”(이하 “정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또는 제2급 정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정해보상연금 지급
  4. 피보험자가 재해로 정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 정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정해보상금(연금) 지급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정해상태의 등금이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정해진단을 기준으로 정해상태의 등금을 결정합니다.

2.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4조(피보험자의 변경)가 적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 【회사가 제적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입국, 영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송납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송납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5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④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발생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류 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 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상위 등금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가 이미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기증된 정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정해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정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에 대하여는 이미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정해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 급여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또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정해

⑧ 제1항 제3호에서의 정해보상연금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除)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 제12조 【전쟁, 기타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항 내지 제6항 정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제13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항약서(건강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항목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중환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항약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 제1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계약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단기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인별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한다. 악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예이츠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외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7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일련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 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 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 이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재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제19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계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발생당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2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21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

로그인 등에 대한 회사의 조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표시표" 참조)

⑤ 회사는 만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 만기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2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24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또는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姓)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치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직책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26조 【개발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발계약으로 전환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발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7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지급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제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1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1항,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3항,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7조(약관대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문정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예금보험기법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 1종 (순수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 원(정기월납, 단위 원)]

| 구분 |       | 경과기간  |     |       |       |       |       |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보  | 1년만기  | 납입보험료 | 612 | -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    | 3년만기  | 납입보험료 | 576 | 1,728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    | 5년만기  | 납입보험료 | 468 | 1,404 | 2,340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    | 7년만기  | 납입보험료 | 432 | 1,296 | 2,160 | 3,024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    | 10년만기 | 납입보험료 | 408 | 1,224 | 2,040 | 2,856 | 4,08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0     |
| 해  | 1년만기  | 납입보험료 | 276 | -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    | 3년만기  | 납입보험료 | 282 | 756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    | 5년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612   | 1,020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    | 7년만기  | 납입보험료 | 192 | 576   | 960   | 1,344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    | 10년만기 | 납입보험료 | 180 | 540   | 900   | 1,260 | 1,80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0     |

● 2종 (만기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 전기보험, 만해 환)

| 구분 | 정액기간  |       |       |        |        |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남  | 1년만기  | 남입보험료 | 8,724 | -      | -      | -      |
|    |       | 해약환급금 | 7,882 | -      | -      | -      |
|    | 3년만기  | 남입보험료 | 3,800 | 10,800 | -      | -      |
|    |       | 해약환급금 | 2,474 | 9,720  | -      | -      |
|    | 5년만기  | 남입보험료 | 2,340 | 7,020  | 11,700 | -      |
|    |       | 해약환급금 | 993   | 5,360  | 10,530 | -      |
|    | 7년만기  | 남입보험료 | 2,382 | 7,056  | 11,760 | 16,464 |
|    |       | 해약환급금 | 750   | 5,121  | 10,304 | 16,464 |
|    | 10년만기 | 남입보험료 | 1,632 | 4,896  | 8,160  | 11,424 |
|    |       | 해약환급금 | 0     | 2,423  | 5,908  | 9,786  |
| 여  | 1년만기  | 남입보험료 | 3,924 | -      | -      | -      |
|    |       | 해약환급금 | 3,532 | -      | -      | -      |
|    | 3년만기  | 남입보험료 | 1,620 | 4,860  | -      | -      |
|    |       | 해약환급금 | 1,116 | 4,374  | -      | -      |
|    | 5년만기  | 남입보험료 | 1,056 | 3,168  | 5,280  | -      |
|    |       | 해약환급금 | 459   | 2,406  | 4,782  | -      |
|    | 7년만기  | 남입보험료 | 1,056 | 3,168  | 5,280  | 7,392  |
|    |       | 해약환급금 | 319   | 2,290  | 4,623  | 7,392  |
|    | 10년만기 | 남입보험료 | 732   | 2,196  | 3,660  | 5,124  |
|    |       | 해약환급금 | 0     | 1,082  | 2,550  | 4,380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금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인 기 축 하 금<br>(인기환급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제1금 중액 포함)   | - 1·3·5년만기<br>: 이미 납입한 보험료 95%<br>- 7·10년만기<br>: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 저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500만원                                                                                                              |
| 장해 보상 연금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해로 제1금 또는 제2금 중액상태가 되었을 때 | · 제1금 : 매월 150만원씩 120회<br>· 제2금 : 매월 100만원씩 120회<br>· 제3금 : 500만원<br>· 제4금 : 300만원<br>· 제5금 : 150만원<br>· 제6금 : 100만원 |
| 잔해보상금(여금)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해로 제3금 내지 제6금 중액상태가 되었을 때 | · 제3금 : 500만원<br>· 제4금 : 300만원<br>· 제5금 : 150만원<br>· 제6금 : 100만원                                                     |

(별표 2) 제 해 분 류 표

제하라 함은 수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채종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  
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수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직업사건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시행)중 “질병이한  
및 사상의 외인”에 의한 것임.

| 분 | 류             | 항 | 목                                                                   | 분류번호      |
|---|---------------|---|---------------------------------------------------------------------|-----------|
| 1 |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1 |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09 |
|   |               |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   |               |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버스를 탑승자                                              | V20 - V29 |
|   |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상의 탑승자                                            | V30 - V39 |
|   |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   |               |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 - V59 |
|   |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60 - V69 |
|   |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   |               |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V89 |
|   |               |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   |               |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   |               |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   |               |   | 13. 추락                                                              | W00 - W19 |
|   |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W49 |
|   |               |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W64 |
|   |               |   | 16. 불의의 역수                                                          | W65 - W74 |
|   |               |   | 17. 기타 불의의 조종 위험                                                    | W75 - W84 |
|   |               |   | 18. 전류, 방사선 및 극한한 기온 및 압력에 노출                                       | W85 - W99 |
|   |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X09 |
|   |               |   | 20. 열 및 가열된 물체의 접촉                                                  | X10 - X19 |
|   |               |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 X20 - X29 |
|   |               |   | 22. 자인의 힘에 노출                                                       | X30 - X39 |
|   |               |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 - X49 |
|   |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 X50 - X59 |
|   |               |   | 25. 기타                                                              | X60 - X69 |
|   |               |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X70 - X74 |
|   |               |   | 27. 범죄행위 및 전쟁행위                                                     | X75 - X79 |
|   |               |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물질                                    | X80 - X89 |
|   |               |   | 29. 의학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단                                            | X90 - X99 |
|   |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의 의한 부작용                                      | Y00 - Y09 |
|   |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br>발생증상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10 - Y19 |
|   |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된 전염                                    | Y20 - Y29 |

\* 제외사항

- "역물 및 의약품" 외한 불의의 중독을 의약품 또는 약물 조성에 의한 위해 표기방법 (U23.3)
- "기타" 고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을 한국표준직업사건분류상 A00~F0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단"중 진료과정의 고열 또는 과열이 없는 사고
-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의 의한 부작용"중 급격한 액체손상으로 인한 필수
- "약수, 질서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발에 의한 호흡장애 및 심장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범죄 개입중 치상 (V85.5)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 등 급   | 신                                               | 제                                           | 장                                                         | 해                                                  |
|-------|-------------------------------------------------|---------------------------------------------|-----------------------------------------------------------|----------------------------------------------------|
| 제 1 급 | 1. 두손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 팔 또는 발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4. 총복부, 정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2. 총복부, 정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3. 한팔 및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급 | 1. 한손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영구히 잃었을 때                      |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영구히 잃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4 급 | 1. 두손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2. 팔 또는 발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br>한을 받게되었을 때 | 4. 총복부, 정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기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br>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 등 급   | 신                                                          | 취                                                          | 장                                                          | 해                                                                |
|-------|------------------------------------------------------------|------------------------------------------------------------|------------------------------------------------------------|------------------------------------------------------------------|
| 제 4 급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4. 한쪽의 정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정맥에 뚜렷한 정맥을 영구히 남겼을 때             | 15. 좌측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제 5 급 | 1. 이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제 6 급 | 1.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3. 한쪽의 정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4. 좌측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5. 좌측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 한발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8.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 제 7 급 | 1.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정상신장"
  - "정상"이란 건강업자는 질병의 유자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대응으로 인하여 정상 태인의 간 표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성병의 유자를 위하여 수시로 태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치대응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태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신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성형유자가 불가능하며 혈액류식 등 의료처리를 정상태도 받아야 함
3. "임상원인 기인증적의 치환"
  - 종양을 심혈, "색소", "색소", "색소" 또는 "색소" 등을 하는데 있어 정맥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력상 능력이 떨어져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이란 "것"
  -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시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으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시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으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심어내는 기능을 잃은것"
  - 가. "말 또는 심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완(口, 口), 치완(口, 口), 구개완(口, 口), 후두완(口, 口) 중 유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서 말의 실어증으로서 음성인지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나. "말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3) 성대장애를 때아 넘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말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음성 이외의 것은 심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심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 가. "말 또는 심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완, 구개완, 후두완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말어내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음성 이외의 것은 심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정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 수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츠의 경우에 정맥상상의 정도를 각각 0.01, 0.02, 0.03, 0.04(헤르츠)로 했을 때, 0.04(헤르츠)의 값이 0.04(헤르츠)보다 작아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정맥의 뚜렷한 장애"
  - 정맥의 정맥에 따른 길이 60cm(정맥)보다 작아도 0.04(헤르츠)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계속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코가 결손된 경우로서 영구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플러리의 운동가능성을 원칙로 할은 것을 말하며, 플러리의 완전 운동여비 또는 플러리 각각의 3년 단월 (단은 이계단월, 팔공계단월, 순회, 다리는 공반판월, 두물, 발목)의 완전 강력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례를 연구해 할수 있는 경우(단월판월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플러리 권장의 무결한 존재"  
플러리의 각각의 3년 단월의 운동 가능 영역이 성립지 운동 가능영역의 3이하도록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안판월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무결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무결한 기형"  
몸상의 의복을 착용하며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해 할수 없는 점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운동 이하기 전후금하기 및 후유체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여 병리적 병위의 3이하도록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무결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운동 이하기 전후 금하기 및 후유체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여 병리적 병위의 3이하도록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운동 이하기 전후금하기 및 후유체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여 병리적 병위의 3이하도록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관에서 첫째마디) 기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관에서 둘째마디) 이 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관에서 첫째마디) [첫째손가락은 발절관(관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위지절간관절(관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관에서 둘째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관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발배 발가락의 경우 발절관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발절관(관에서 첫째마디)의 3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관에서 첫째마디) [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관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아래팔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종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로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마. 정해승근보통포 중 제1근의 56.7.8.9, 제2근의 3.4.5, 제3근의 8 또는 제4근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씩 한다.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로 한다.

\* 이 특약은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만 적용하는 약관입니다.

## 무배당 제해사망보상특약 약관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講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계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계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2조 【특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익자”라 합니다.다에게 약속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에 별표2 “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제해(이하 “제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제해사망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 정한 평일(이하 “평일”이라 합니다.)에 제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제해사망보험금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신고(失踪宣告)있거나 제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제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제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제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제4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除)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보험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요령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을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인 인간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나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10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에시표"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위 : 보험가입금액 10만 원, 정가별표 단위 원)

| 구분 | 정 가 기 간 |       |     |     |       |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집  | 1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3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612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612 | 1,020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7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612 | 1,020 | 1,428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04 | 612 | 1,020 | 1,428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예  | 1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0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3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0  | 180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0  | 180 | 300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7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0  | 180 | 300   | 42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0  | 180 | 300   | 42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무배당 적회보상특약 약관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금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입보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유입'에<br>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500만원 |
| 형질개선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형질'에<br>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별표 2)

제해분류표

주보험 별표 2와 동일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주보험 별표 3과 동일

## 무배당 정책보상특약 약款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2조 【특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내용서까지 고모 함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사유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피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여기서 약칭한 보험금발급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양” 및 “평일”의 상의에 응한 후유(後遺) “후유”이라 합니다(여기서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정책보상분류표”이하 “정책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또는 제2급 정책상태가 되었을 때 : 조양정책보상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양” 및 “평일”의 상의에 응한 후유(後遺)이해 “평일”이라 합니다(여기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책분류표중 제1급 또는 제2급 정책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정책보상연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책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 정책상태가 되었을 때 : 후일정책보상연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책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 정책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정책보상연금 지급
- ② 제1항의 경우 정책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정책전단을 기준으로 정책상태의 등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제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제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제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류 이상의 제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제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해가 이미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정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정해에 해당하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정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에 대하여는 이미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재항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정해로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2. 제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또는 정해보상연금 또는 정해보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정해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정해보상연금금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보험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전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요약상신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을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서류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해약환급금예시표·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아울+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단위 : 보험가입금액 10만 원, 전가환납 단위 원)

| 구분 | 정액기간  |     |     |     |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  | 1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3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5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1,092 |
| 지  | 7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1,092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10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3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5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지  | 7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1,092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10년만기 |     |     |     |       |
|    | 납입보험료 | 156 | 468 | 780 | 1,092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금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추정정해보상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통일"에<br>해로 인하여 제1금 또는 제2금 정해상<br>타가 되었을 때 | · 제1금: 매월 300만원씩 12회<br>확정지급<br>· 제2금: 매월 200만원씩 12회<br>확정지급   |
| 판정정해보상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통일"에<br>해로 인하여 제1금 또는 제2금 정해상<br>타가 되었을 때 | · 제1금: 매월 150만원씩 12회<br>확정지급<br>· 제2금: 매월 100만원씩 12회<br>확정지급   |
| 추정정해보상금여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통일"에<br>해로 인하여 제3금 내지 제6금 정해상<br>타가 되었을 때 | · 제3금: 1,000만원<br>· 제4금: 600만원<br>· 제5금: 300만원<br>· 제6금: 200만원 |
| 판정정해보상금여금 | 피보험자가 특정보험기간중 "통일"에<br>해로 인하여 제3금 내지 제6금 정해상<br>타가 되었을 때 | · 제3금: 500만원<br>· 제4금: 300만원<br>· 제5금: 150만원<br>· 제6금: 100만원   |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주보험 별표 2와 동일

(별표 3) 장 해 등 금 분 류 표

주보험 별표 3과 동일

\* 이 특약은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만 적용하는 약관입니다.

## 무배당 교통장해보상특약 약관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2조 【특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에 별표2 “교통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장해(이하 “교통장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장해보상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4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 정한 평일(이하 “평일”이라 합니다)에 교통장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장해보상연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교통장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장해보상금여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교통장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장해보상금여금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정해진단을 기준으로 정해상태의 등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행기간중에 두 종류 이상의 정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된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정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에 대하여는 이미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정해로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또는 교통정해보상연금 또는 교통정해보상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정해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교통정해보상연금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보행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행기간은 주보험의 보행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8조 【호려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을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정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10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중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해약환급금예시표”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아울+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일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기일금액 10만 원, 정기월납 단위 원)

| 구분 |        | 강 의 기 간 |    |     |     |     |     |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내  | 1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    | 3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    | 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    | 7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504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504 | 72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0   |
| 외  | 1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   | -   | -   | -   |
|    | 3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   | -   | -   |
|    | 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   | -   |
|    | 7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504 | -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   |
|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72 | 216 | 360 | 504 | 720 |
|    |        | 해약환급금   | 0  | 0   | 0   | 0   | 0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단: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금 부 일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화염보험금<br>정액보상금액 |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중 “화염”에<br>통제책으로 인하여 제1급 또는 제2급<br>해상도가 되었을 때 | · 제1급: 매월 300만원씩 120회<br>확정지급<br>· 제2급: 매월 200만원씩 120회<br>확정지급 |
| 화염보험금<br>정액보상금액 |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중 “화염”에<br>통제책으로 인하여 제1급 또는 제2급<br>해상도가 되었을 때 | · 제1급: 매월 150만원씩 120회<br>확정지급<br>· 제2급: 매월 100만원씩 120회<br>확정지급 |
| 화염보험금<br>정액보상금액 |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중 “화염”에<br>통제책으로 인하여 제3급 내지 제6급<br>해상도가 되었을 때 | · 제3급: 1,000만원<br>· 제4급: 600만원<br>· 제5급: 300만원<br>· 제6급: 200만원 |
| 화염보험금<br>정액보상금액 |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중 “화염”에<br>통제책으로 인하여 제3급 내지 제6급<br>해상도가 되었을 때 | · 제3급: 500만원<br>· 제4급: 300만원<br>· 제5급: 150만원<br>· 제6급: 100만원   |

(별표 2)

## 교통재해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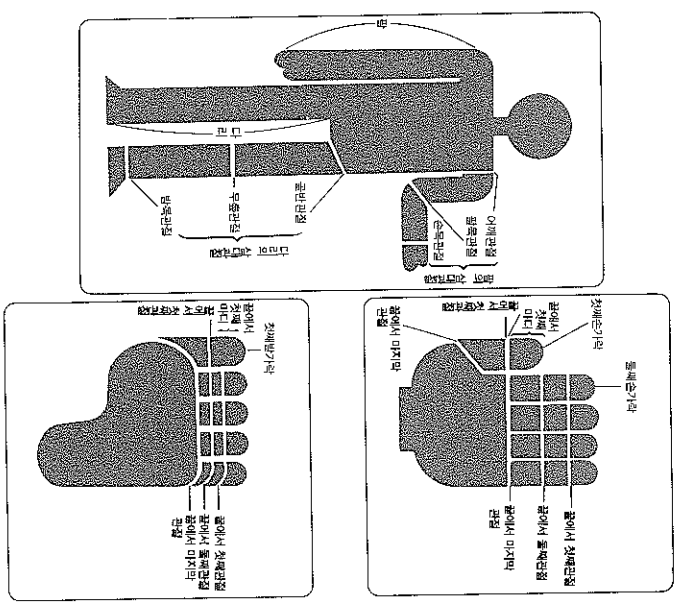
-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주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  
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물  
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발생하고 있는 동안 또는 순격으로서 경찰관을 찾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기관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물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전조등, 공작물등의 도괴 또는 전조등,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물의의 사고
-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함은 본래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  
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중형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물의의 사고영역라도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  
입니다.
-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차, 토목작업장, 채석장, 반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여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 포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사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인접이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3)

중 의 등 급 판 류 표

주 보 형 별 표 3 과 등 일

# 신체부위 설명도



MEMO

MEMO

MEMO